

서울특별시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박상혁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3208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: 2025년 10월 20일
발의자: 박상혁 의원(1명)
찬성자: 강석주, 고광민, 김경훈,
김길영, 김영철, 김용호,
김원중, 김원태, 김재진,
김지향, 김태수, 남궁역,
민병주, 서상열, 오금란,
유만희, 유정희, 윤기섭,
이상욱, 이은림, 이종태,
이종환, 임춘대, 채수지,
최민규, 허훈, 홍국표
의원(27명)

1. 제안이유

- 서울시 내 특수학교가 없는 자치구의 특수학교 신설을 촉진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권 보장을 도모하고자 특수학교 설치가 필요한 지역의 폐교재산 활용 시 특수학교 신설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교육감이 특수학교 설치가 필요한 지역의 폐교재산 활용계획 수립 시 특수학교 설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함(안 제4조의2 신설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해당사항 없음.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다. 기타 : 신구조문대비표

서울특별시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조의2(특수학교 설치를 위한 폐교재산의 우선 활용) ① 교육감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시 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에 따른 특수교육기관의 확충이 필요한 지역의 폐교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이 우선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야 한다.

1. 「유아교육법」 제15조에 따른 특수학교

2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

② 제1항에 따른 특수교육기관의 확충이 필요한 지역은 교육감이 지정·고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p><u>제4조의2(특수학교 설치를 위한 폐교재산의 우선 활용) ① 교육감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시 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에 따른 특수교육기관의 확충이 필요한 지역의 폐교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이 우선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u>1. 「유아교육법」 제15조에 따른 특수학교</u></p> <p><u>2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</u></p> <p><u>② 제1항에 따른 특수교육기관의 확충이 필요한 지역은 교육감이 지정·고시한다.</u></p>

서울특별시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

1. 판단 근거

- 서울특별시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제4조의2(특수학교 설치를 위한 폐교재산의 우선 활용)를 신설하여, 교육감이 서울시 내 특수학교 설치가 필요한 지역의 폐교재산 활용계획 수립 시 특수학교 설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자 한 것으로, 별도의 비용을 수반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

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과

재정분석과장 이 선 희

추계제제팀장 김 중 헌

추계분석관 김 진 형

☎ 02-2180-7954

e-mail : kjh0816@seoul.go.kr

※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.